

국책사업관리위원회 규정

제정 2016.01.19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대학과 산학협력단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대응역량을 높이고 사업 선정 이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국책사업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기능과 구성 운영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부총장(학사부총장 또는 산학부총장)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인재개발처장, 사무처장, 산학협력단장(이상 “당연직 위원”이라 한다)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.(개정 2017. 6. 7)

② 위원장은 부총장(학사부총장 또는 산학부총장)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17. 6. 7)

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문케 할 수 있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

1.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및 분석
2. 신규사업 추진 업무 관련 인프라 구축
3. 사업단별 정기적 성과 보고 및 평가
4. 국책사업 운영 및 조직 개선방안 검토
5. 국책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
6.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(회의) ① 정기회의는 (분기별 1회)로 한다.

② 임시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신규사업이 공고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조(행정지원) 위원장은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해 간사를 기획팀과 산학협력단에 각 1명씩 둔다.

제7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(2016.01.19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6. 7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